

예산총칙

2009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054,047,235	31,621,417
일반회계	811,441,109	24,343,233
특별회계	242,606,126	7,278,184
기타특별회계	242,606,126	7,278,184
공유재산	3,100,181	93,005
주택사업	36,100	1,083
의료보호기금운영	3,795,926	113,878
영세민생활안정기금운영	1,115,000	33,450
장기미집행	1,730,000	51,900
도시재정비촉진	517,000	15,510
도시개발	17,777,669	533,330
도시기반시설	1,210,000	36,300
교통사업	26,749,479	802,484
도시철도	186,574,771	5,597,243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와 같다.

단, 각 공기업특별회계는 별책으로 한다.

제 3 조 2009년도 채무부담행위는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 와 같다.

제 4 조 2009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 와 같다.

제 5 조 2009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 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9,587,515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2009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53,7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